# 용 역 계 약 서

계약번호: DW-FDH-ENG-150127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이하 "갑"이라 한다)과 주식회사 윈테코(이하 "을"이라 한다)는 쿠웨이트 KNPC CFR MAB2 Project 내 FDH JV(이하 "Buyer"라한다)가 발주한 Field Erected Tanks 프로젝트(이하 "Project"라 한다)와 관련하여 설계, 기자재 공급, 설치 및 시운전 감리 등을 포함한 "갑"의 "Buyer"에 대한 제반 의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을"이 제2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 및 포괄적 기술지원(이하 "용역"이라 한다)을 "갑"에게 제공하는데 있어 다음과 같이합의하고,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본 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라한다) 2통을 작성, 기명 날인한 후 각 1통씩 보관한다.

### 제1조 (목적)

"본 계약서"는 "갑"이 "Project"와 관련하여 "Buyer"와 2015년 1월 22 일 체결한 계약(Contract No. C9FP-FIO-FIO1-K001 (Off-shore) 상 "갑"의 Field Erected Tanks 공급 역무를 수행함에 있어 "을"이 "갑"에게 제공해야 하는 "용역"의 범위 및 협력 원칙을 규정함으로써 "Project" 수행을 원활히 함에 그목적이 있으며, 양 당사자는 신의와 성실로써 "Project"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 제 2 조 ("을"의 역무 범위)

(1) "을"은 "Project"의 기본설계 및 상세설계, 설비구매와 관련된 기술지원, 설비검수, 설비설치 및 시운전 감리 등 엔지니어링 및 기술 지원업무에 대한 모든 의무를 자신의 비용으로 책임지고 수행하여야 한다. 전술한 역무에 대한

한 구체적인 사항은 부록 "일반약정" 및 "특별약정"의 규정에 의한다.

- (2) "을"은 "본 계약서" 상 "용역"을 첨부된 "Project"의 진행일정에 따라 수행하고 각각의 "용역" 수행 후 "갑"에게 이를 통보하여 "을"이 수행한 "용역"에 대해 "갑"의 서면승인을 취득하여야 한다. 단, "갑"이 새로운 용역을 요청하는 경우 "갑"은 "을"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진행일정에 대해 정하고이를 서면으로 "을"에게 통보한다.
- (3) "을"은 전 (1)항의 업무의 수행에 있어 "갑"의 지시에 따라 이를 수행하여 야 하며, 만일 "갑"으로부터 별도의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을"은 전문가로 서의 자신의 지식, 경험 및 식견을 가지고 "본 계약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제 3조 (계약금액)

"갑"은 "을"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역무를 수행하는 포괄적이고 완전한 대가로 미화 구백사십팔만달러 (USD 9,480,000, 이하 "계약금액"이라 한다)를 "을"에게 지급하며 구체적인 지급 방법은 본 계약서 제4조에 따른다.

## 제 4 조 (대금 지급)

(1) "갑"은 "본 계약서" 제3조에 명시된 금액을 아래 지급조건에 따라 분할하 여 "을"이 지정하는 계좌로 지급한다.

차수	지급비율 ("계약금액"기준)	지급 조건
1차	20%	"을"의 General Assembly drawings (기본설계) 및 Calculations 제출 완료 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이내

2 차	10%	"을"이 제출한 General Assembly drawings 에 대한 "갑"의 1 차 검수 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이내
3 차	10%	"을"이 제출한 General Assembly drawings 에 대한 "갑"의 최종 승인 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4 차	10%	"을"이 제출한 Calculations 에 대한 "갑"의 최종 승인 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
5차	20%	"을"의 최종 공급 물량 산정에 대한 "갑"의 최종 승인 및 관련 물량 선적 완료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 일 이내
6 차	21%	"을"의 건설 설계도면에 대한 "갑"의 최종 승인 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
7 차	9%	"을"의 현지 시운전 감리 완료 및 As built 에 대한 "갑"의 최종 승인 후 "을"로부터 Invoice 를 수령한 날로부터 5일 이내

- (2) "을"은 상기 (1)항 상 각 Invoice 산출 내역을 증빙하기 위한 역무 관련 공 정표, 산출물 및 인력 투입 내역 등을 "갑"에게 제출해야 한다.
- (3) "을"이 "본 계약서"에 명시된 "을"의 역무를 불이행 또는 이행지체 함으로써 "갑"이 "Buyer"로부터 수령한 "계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Buyer"에 반환하여야 하는 경우, "을"은 "갑"이 "Buyer"로부터 해당 통지를 수령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해당 금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 (4) "을"이 상기 (1)항에 명기된 각 차수에 따라 수행해야 할 "용역"을 수행하지 않거나, "Buyer"의 결정에 따라 "Project" 잘했일정이 연기된 경우 또는/및 "용역" 및 산출물의 품질에 대해 "Buyer"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을"의 실질적인 "용역"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갑"이 판단할 경우, "갑"은 "을"에게 다음 차수의 대금의 지급을 유보할 수 있다.

(5) "을"은 "용역"과 관련하여 "Buyer"의 결정에 따른 "용역" 내용의 변경 및 기타 사유들로 인해 제 3조에 명시된 "계약금액" 이외에 별도의 추가정산이 필요한 경우, "갑"에게 해당 사항을 요청할 수 있으나 "갑"은 "Buyer"로부터 관련 금액을 수령한 경우에 한하여 "을"에게 해당 대금을 지급한다.

### 제 5 조 (계약이행보증 및 면책)

- (1) (계약이행보증 담보) "본 계약서"에서 규정한 "을"의 모든 의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을"은 보험금액이 "계약금액"의 5%이고, 보험기간이 "본계약서"의 체결일로부터 "Project"상 "갑"의 "Buyer"에 대한 보증의무가종료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 시점2016년 12월 31일까지인 보증보험증권(이하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이라 한다)을 "본 계약서" 체결일로부터 5개월 내에 "갑"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2) (보험기간의 연장) "을"이 "갑"에게 제공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상의 보험기간 내에 "Project"상 "갑"의 "Buyer"에 대한 보증의무가 종료하지 않을 경우에 "을"은 "갑"에게 제공한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보험기 간을 3개월 단위로 연장하여야 하며, 동 만기일은 전술한 보증의무의 완료 시점까지 연장된다. 또한, "갑"의 귀책사유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Project"의 일정이 지연되어 "갑"이 상기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의 기 한을 연장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을"은 해당 기한을 연장하여야 한다.
- (3) (면책) "을"이 본 계약에서 정한 자신의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불이행하거나 용역수행 지연, 지적재산권 침해 발표가 사유로 "Buyer" 또는 제 3자가 "갑"에게 클레임의 제기, 손해배상의 청구, 대금지불의 거절, 소송의 제기 등(이하 "클레임 등"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 "을"은 이러한 "클레임 등"으로부터 "갑"을 면책시켜야 하며 이러한 "클레임 등"을 자신의 책임

과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만일, "을"의 전술한 "클레임 등"의 미해결 또는 해결지연으로 인하여 "갑"에게 손해(예를 들어, 제3자에게 "갑"이 지불한 금액, 새로운 하도급자를 물색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하도급자를 변경하여 "Project"를 이행하는데 따른 추가비용, 변호사비용, 조사비용, Consultant Fee, 소송비용, "갑"이 지출한 금액에 대한 연리 4.5%에 해당하는 이자 등)가 발생한 경우 "을"은 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한편, "갑"은 "Project"상 "Buyer" 또는 제3자로부터 수령한 "클레임 등" 관련 통지서를 "을"에게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클레임 등"에 대한 입증 없이상기 손해배상 청구 및 "클레임 등"의 해결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자신에게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여야 한다.

#### 제6조 (도면 및 관련서류)

"갑"은 Appendix에 명시된 도면 및 일체의 관련서류를 "갑"이 "Buyer"에게 지체 없이 제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 내에 준비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7조 (해제 및 해지)

당사자 일방에게 아래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 대방은 이 계약서를 사전 최고 등의 절차 없이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귀 책당사자는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전액 배상하여야 한다. 단, "Project"가 해지 또는 해제되는 경우 "갑"은 즉시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갑"의 해지통보를 받는 즉시 모든 용역의 수행을 중단하여야 한다.

- (1) 본 계약서에 규정된 어느 조항을 위반한 경우
- (2) 압류, 가압류, 가처분을 당하거나 파산신청, 회생절차개시신청 또는 퇴출기

업으로의 지정, 채권금융기관협의회로부터 소집통보, 구조조정협약적용의 신청이 있을 경우

- (3) 발행, 배서, 인수 또는 지급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 등이 부도 처리된 경우
- (4) 전업 또는 폐업하거나 기타 본 계약서상 의무를 이행할 능력이나 이행의 사가 없다고 판단할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있는 경우
- · (5)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양 당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Project"가 종료되는 경우에 본 계약서도 자동 해제 또는 해지되며, 동 해제 또는 해지와 관련하여 양당사자는 상대방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되, "갑"은 "Project"와 관련 기성부분에 대한 청구를 통해 "Buyer"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에 한하여 양 당사자가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을"에게 지급한다.

## 제8조 (발효)

/ XTX

본 계약서는 본 계약서 체결과 동시에 발효한다.

## 제9조 (양도금지)

양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를 득하지 않고 본 계약서에 명기된 권리 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승계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 다.

## 제10조 (용역대행금지)

"을"은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 상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 3자에게 대행케 하거나 하도급할 수 없다.

#### 제11조 (비밀유지)

"을"은 "Project" 관련한 일체 사항을 "갑"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제공할 수 없다.

#### 제12조 (통지)

본 계약과 관련한 일체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구두, 묵시적 동의나 의사실현에 의한 방법 등 서면 아닌 방법으로 본 계약 조건의 변경을 주장할 수 없다. 또한, "을"은 본 계약서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변동 사항의 발생 또는 "갑"에게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갑"이 요청할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 제13조 (관할법원)

이 계약서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제1심의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으로 한다.

## 제14조 (기타)

본 계약서에 별도로 정하지 않고 있는 사항은 "Project"관련 문서, , "일반약정" 및 "특별약정"의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하기로 한다. 만일 준용할 규정이 없거나 준용이 불가능하다고 객관적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일반 상관례에 따라 양 당사자간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해당사항에 필요한 규

정을 서면으로 합의하여 정하기로 한다.

### 첨부.

1000

- "일반약정": PART III GENERAL TERMS AND CONDITIONS
- "특별약정": PART II SCOPE OF WORK 및 PART IV SPECIAL TERM
- Project 진행일정: PART I EXHIBIT ONE MILESTONE SCHEDULE

체결일: 2015년 1월 27일

갑 : 주식회사 대우인터내셔널 인천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165 대표이사 사장 전 병 일 을 : 주식회사 윈테코 서울시 금천구 가산동 60-17 대표이사 오 창 재 (인)

